

2023. 10. 20.(금) 10:00

제3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2일

2. 제 출 자: 신동윤 의원 등 12인

## 3. 제안사유

-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본회의에서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우므로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의안·청원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위원회의 종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일반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장~안제4장)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인 본회의에서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방행정의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안건을 먼저 심사토록 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책무)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안전을 심사하여야 한다.

### 제2장 위원회 운영 일반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제15호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에 따라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議案) 또는 청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거나 회피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위원

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의 임기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과 임기가 같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그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3장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
3. 경제건설위원회 6명 이내

**제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한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2. 행정복지위원회

가.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육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읍·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달성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경제건설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정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접수된 의안 또는 청원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필요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상임위원)** ① 의회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제7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재임(在任)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前日)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상임위원의 선임)** 상임위원은 의장이 의회 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2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선거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職)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부의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해당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⑥ 상임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상임위원장” 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위원장과 부상임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장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1. 접수된 의안과 청원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위원회가 그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 기간 연장 사유를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까지 제3항에 따른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그 특별위원회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특별위원 선임 등)**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을 추천할 경우 의장은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 및 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특별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보임된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특별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특별위원장의 사임 및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6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회의의 의결로 둘 수 있다.

1. 예산안

2. 세입세출결산

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4. 그 밖에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 등과 위

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5조,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5조,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5장 보칙

**제18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그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되,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의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2023. 3. 21. 일부개정, 2023. 9. 22.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22. 6. 2. 일부개정 · 시행)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 심의회 ·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2022. 2. 28. 일부개정 · 시행)

제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 ·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 3일의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회사무국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으면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해당 의장 ·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은 중복하여 이루어 질 수 없다.

③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④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정견 발표에 대해 다른 의원의 질의 · 토론 등 일체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자인 발표자는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김보경의원 등 3인

## 3. 제안사유

-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방식이 다양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달성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정책 효용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운영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사회관계망 서비스 정의와 운영지원 근거 신설(안 제2조제12호 및 제3장)
- 전자우편의 일상화에 따른 정의·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제5호 및 제5장)
- 홈페이지 운영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3조 및 제17조)
-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 5.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방식이 다양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정책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터넷 이라 함은” 을 ““인터넷” 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을 ““인터넷시스템”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용자” 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4호(중전의 제3호) 중 “홈페이지 라 함은” 을 ““홈페이지”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인터넷 민원 이라 함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를 ““전자민원”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제2조제6호(중전의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를 따른다.

제2조제8호(중전의 제7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9호(중전의 제8호) 중 “정보화부서의 장 이라 함은”을 ““정보화부서의 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소관부서의 장 이라 함은”을 ““소관부서의 장”이란”으로, “의한”을 “의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10호) 중 “홈페이지운영요원 이라 함은”을 ““홈페이지운영요원”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회관계망 서비스”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전자정부법」 제12조에 따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시”를 “군수는 정보화부서, 소관부서별 홈페이지운영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그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제2항 중 “등록한”을 “등록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등”을 “등 공익을 저해하거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보공개 청구)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준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를 각각 제4장(중전의 제3장)에서 제8장(중전의 7장)까지로 하고, 제3장(제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지원

제8조(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지원)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군정·의정홍보, 이용자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홍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시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중전의 제3장)의 제목 중 “운영” 을 “설치·운영” 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인터넷 민원” 을 “전자민원” 으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을 “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3항 중 “민원담당부서의” 를 “법 제36조에 따라 민원담당부서의” 로,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를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로”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민원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전자민원 중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 을 “전자민원창구” 로, “그러지 아니하다.” 를 “예외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민원상담 기능 제공)” 을 “(민원상담 제공)”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을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을 “전자민원창구를” 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예외로 한다.”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를 “법에 따른 민원에” 로 한다.

제13조 중 “군수는” 을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17조에 따라” 로 한다.

제6장(중전의 제5장,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장(중전의 제6장)의 제목 중 “운영” 을 “설치·운영” 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그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 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록되어 있는” 을 “수록된” 으로, “DB” 는 “데이터베이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u>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인터넷 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u></p> <p>2. <u>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u></p> <p><u>&lt;신 설&gt;</u></p> <p>3. <u>홈페이지 라 함은 이용자에게</u></p>	<p><b>제1장 (현행과 같음)</b></p> <p><b>제1조(목적)</b> <u>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정의)</b>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p> <p>1. “<u>인터넷</u>” 이란 ----- ----- -----.</p> <p>2. “<u>인터넷시스템</u>” 이란 ----- ----- -----.</p> <p>3. “<u>이용자</u>” 란 <u>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4. “<u>홈페이지</u>” 란 -----</p>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 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신 설>

5. 전자우편 이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 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8. 정보화부서의 장 이라 함은 군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소관부서의 장 이라 함은 군 직제에 의한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  
-----  
-----.

5. “전자민원”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 -----  
-----.

5의2. “전자민원창구” 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6. <삭 제>

7. “개인정보” 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를 따른다.

8. <삭 제>

9. “정보화부서의 장” 이란 -----  
-----  
-----.

10. “소관부서의 장” 이란 -----  
---- 의해 -----  
-----  
-----.

10. 홈페이지운영요원 이라 함은 소관부서별 홈페이지운영자를 말한다.

<신 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인터넷시스템은 정보화부서에서 구축한다.

② (생략)

1. ~ 2. (생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생략)

5. 전자우편 ID 이용

6. (생략)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

11. “홈페이지운영요원” 이란 ---

-----  
---.

12. “사회관계망 서비스”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현행과 같음)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전자민원창구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전자정부법」 제12조에 따라 ----- 위해 -----

③ -----  
----- 군수는 정보화부서, 소관부서별 홈페이지운영요원을 지정·운

탁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② (생략)

제5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등록) ① (생략)

②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운영요원에게 의뢰하여 등록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그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록하고자 하는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관리는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 소관부서로 하며, 사무분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1. ~ 7. (생략)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정보화부

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각 호에 -----  
-----.

1. ~ 7. (현행과 같음)

8. -----  
----- 사람이 -----  
-----
9. 그 밖에 -----  
----- 등 공익을 저해하거나 -----  
-----

제7조(정보공개 청구) 군수는 홈페이지

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준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지원

<신 설>

제 3 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창구 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  
행령」 제11조에 의한 전자민원창  
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  
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  
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  
원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  
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  
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  
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지원)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군정·의정홍  
보, 이용자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  
여 홍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추  
진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시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 전자민원-----  
----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  
-----  
----- 법-----.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  
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업무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생략)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③ 법 제36조에 따라 민원담당부서의 -----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 -----.

④ 전자민원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전자민원 중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한다.

<삭 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 대화방 운영)** ① (생략)

② 군수와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

----- 전자민원창구  
-----  
----- 예외로 한다.

③ -----  
-----  
----- 사람-----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민원상담 제공)** ① -----  
-----  
-----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을 -----  
-----  
-----.

② 전자민원창구를 -----  
-----  
----- 예외로 한다.

**제5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법에 따른 민원에

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전자우편 ID 관리 및 보급

제14조(전자우편 관리) ①전자우편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우편의 사용자수, 사용자별 용량은 시스템의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군수는 전자우편 ID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17조에 따라 -

-----  
-----  
-----.

제6장 <삭 제>

<삭 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 6 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7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신설>

제 7 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를 설정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신설>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 ② (생략)

제7장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제17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그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수록된 -----  
데이터베이스-----  
--.

③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 ② (현행과 같음)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2021.7.20. 타법개정, 2022.7.21. 시행)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2022.1.11. 타법개정, 2022.7.1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 7. 삭제
-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2023.3.14. 일부개정, 2023.9.15.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2023.9.12. 일부개정, 2023.9.15. 시행)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삭제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전자정부법(법률)」 (2021. 7. 20. 타법개정, 2022. 7. 21. 시행)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실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김은영의원 등 3인

##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이 겪는 생활고와 고립감을 줄일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5.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이 겪는 생활고와 고립감을 줄일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
2. 진로·진학 교육 지원사업
3. 취업·창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및 실적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 등)**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이 조례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본다.

제3조(자립준비청년등 중 일부 적용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9일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아동복지법(법률)」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아동복지법 시행령」 (2023.9.26. 타법개정·시행)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곽동환의원 등 3인

## 3. 제안사유

- 스토킹과 그에 따라 이어지는 후속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스토킹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 및 사용자·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예산의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5. 관계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스토킹과 그에 따라 이어지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강력범죄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구성원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5.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제1항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스토킹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3.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
2.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프로그램 제공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4. 피해자를 위한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제공
5.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6.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또는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 또는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홍보)**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자료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리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1.17. 제정, 2023.7.18.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톱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톱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톱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스톱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톱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톱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

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023.7.11. 제정, 2023.7.18. 시행)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에 승낙해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

입한다.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2023.7.11.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박주용의원 등 3인

###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으로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 지도·감독 및 환수·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5.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활동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대등”이란 자율방범대와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자율방범대등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등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할 경찰서와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0000. (0/0분기) 지원금 신청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1. 사업명 :

2.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초
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0000. (0/0분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지 출 결 의 서

제000호	결제	담당자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0000.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 명 :</li> <li>○ 일 자 : 0000. 00. 00.(0요일)</li> <li>○ 채 주 :</li> <li>○ 금 액 :            원</li> <li>○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li> </ul>				
※ 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조장	방법대장

○○자율방범대 · 연합대 방법일지

20   년   월

순찰일시	순찰 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 00.00.00.(0요일) 00:00~00:00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2.4.26. 제정, 2023.4.27.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 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023.4.25. 제정, 2023.4.27.시행)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예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최재규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수의사법」 제22조에 따라 공수의에 대한 수당·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2.1.26. 제정·시행)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기관 위임사무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예비지급 조례」를 폐지함

5. 관계법령

-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검토의견

- 공수의 동원 예비지급은 「수의사법」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을 따라야 할 사안이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해당하는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예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예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의사법」(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장·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지도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의사법 시행규칙」(2023. 4. 27. 타법개정·시행)

제22조의14(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의2 관련)

1. 수의사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주간근로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동원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1일 8시간 근로 기준)
  - 나. 야간·휴일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 가목에 따른 금액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
  - 다. 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 여비
2.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소모품의 경우: 구입가 또는 지도·명령 당시 해당 물건에 대한 평가액 중 작은 금액
  - 나. 그 밖의 장비의 경우: 장비의 통상 1회당 사용료에 사용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동원된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중 작은 금액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6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행정리 신설(공동주택 입주)

읍·면	행정리	공동주택명(세대수)	지 번	입주예정
유가읍	봉5리	대구테크노폴리스예미지 더센트럴(894)	봉리 660번지	'23. 11.

○ 행정리 분리

- 가창면 단산리는 북쪽과 남쪽에 각각 신서경로당과 단산경로당이 분리 운영중이며, 북남쪽 마을 간 거리가 3km정도로 거리가 멀어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화합 및 효율적인 업무 도모

4. 주요내용

○ 라반 조정 : 2리 증(331리 ⇨ 333리), 27반 증(2,844반 ⇨ 2,871반)

구분	읍·면	기존			개정			증감		이장 정수	비고
		행정리	반	세대수 (인구수)	행정리	반	세대수 (인구수)	리	반		
신설	유가읍	-	-	-	봉5리 (대구테크노폴리스 예미지더센트럴)	27	894	1	27	1	'23.11. 입주
분리	가창면	단산리	6	186 (409)	단산1리	3	83 (166)	-	△3	-	
					단산2리	3	103 (243)	1	3	1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가읍 신설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른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조정하고, 가창면 단산리의 생활권이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행정리 분리로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행정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유가읍 봉리란 및 유가읍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유가읍	봉리	13	봉1리 봉2리 봉3리 봉4리 봉5리 봉6리 봉7리 봉8리 봉9리 봉10리 봉11리 봉12리 봉13리
유가읍 소계	13	37	37

별표2 중 가창면 단산리란 및 가창면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가창면	단산리	2	단산1리
			단산2리
가창면 소계	12	28	28

별표3 중 유가읍 봉5리란 다음에 같은 읍 봉5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유가읍	봉5리	제 1 반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1동) 401~3501
		2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1동) 302~3502
		3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1동) 303~3503
		4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2동) 301~3501
		5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2동) 302~3502
		6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2동) 303~3503
		7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3동) 301~3501
		8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3동) 302~3502
		9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3동) 303~3503
		10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4동) 201~3401
		11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4동) 202~3402
		12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4동) 203~3403
		13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5동) 201~3401
		14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5동) 202~3402
		15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5동) 203~3403
유가읍	봉5리	제 16 반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6동)

읍 면	리	반	구 역
			201~3501
		17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6동) 202~3402
		18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6동) 203~3403
		19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7동) 201~3501
		20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7동) 202~3402
		21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7동) 203~3403
		22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8동) 201~3501
		23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8동) 202~3402
		24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8동) 203~3403
		25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9동) 201~3501
		26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9동) 202~3402
		27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트럴 109동) 203~3403

별표3 중 가창면 단산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가창면	단산1리	제 1 반	44~64, 142~185, 289~303
		2	220~271, 796, 816~834
		3	841~963
	단산2리	제 1 반	700~770
		2	771~814, 831~834
		3	320~480, 494~529, 639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2】

## 이 장 정 수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유가읍	음리	1	음리	유가읍	음리	1	음리
	양리	2	양1리 양2리		양리	2	양1리 양2리
	용리	2	용2리 용3리		용리	2	용2리 용3리
	봉리	12	봉1리 봉2리 봉3리 봉4리 봉6리 봉7리 봉8리 봉9리 봉10리 봉11리 봉12리 봉13리		봉리	13	봉1리 봉2리 봉3리 봉4리 <b>봉5리</b> 봉6리 봉7리 봉8리 봉9리 봉10리 봉11리 봉12리 봉13리
	쌍계리	4	쌍계1리 쌍계2리 쌍계3리 쌍계4리		쌍계리	4	쌍계1리 쌍계2리 쌍계3리 쌍계4리
	초곡리	1	초곡리		초곡리	1	초곡리
	상리	1	상리		상리	1	상리
	금리	1	금리		금리	1	금리
	유곡리	2	유곡1리 유곡2리		유곡리	2	유곡1리 유곡2리
	도의리	3	도의1리 도의2리 도의3리		도의리	3	도의1리 도의2리 도의3리
	가태리	2	가태1리 가태2리		가태리	2	가태1리 가태2리
	한정리	3	한정1리 한정2리 한정3리		한정리	3	한정1리 한정2리 한정3리
	본말리	2	본말1리 본말2리		본말리	2	본말1리 본말2리
	유가읍 소계	13	36		36	유가읍 소계	13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가창면	용계리	7	용계1리 용계2리 용계3리 용계4리 용계5리 용계6리 용계7리	가창면	용계리	7	용계1리 용계2리 용계3리 용계4리 용계5리 용계6리 용계7리
	오리	2	오1리 오2리		오리	2	오1리 오2리
	정대리	2	정대1리 정대2리		정대리	2	정대1리 정대2리
	냉천리	2	냉천1리 냉천2리		냉천리	2	냉천1리 냉천2리
	행정리	2	행정1리 행정2리		행정리	2	행정1리 행정2리
	상원리	2	상원1리 상원2리		상원리	2	상원1리 상원2리
	단산리	1	단산리		단산리	1	단산1리 단산2리
	대일리	2	대일1리 대일2리		대일리	2	대일1리 대일2리
	주리	3	주1리 주2리 주3리		주리	3	주1리 주2리 주3리
	옥분리	1	옥분리		옥분리	1	옥분리
	삼산리	1	삼산리		삼산리	1	삼산리
	우록리	2	우록1리 우록2리		우록리	2	우록1리 우록2리
가창면 소계	12	27	27	가창면 소계	12	28	28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유가읍	<신설>			유가읍	봉5리	제1반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1동) 401~3501
						2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1동) 302~3502
						3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1동) 303~3503
						4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2동) 301~3501
						5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2동) 302~3502
						6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2동)303~3503
						7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3동) 301~3501
						8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3동) 302~3502
						9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3동) 303~3503
						10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4동) 201~3401
						11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4동) 202~3402
						12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4동) 203~3403
						13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5동) 201~3401
						14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5동) 202~3402
						15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5동) 203~3403
						16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6동) 201~3501

						17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6동) 202~3402
						18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6동) 203~3403
						19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7동) 201~3501
						20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7동) 202~3402
						21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7동) 203~3403
						22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8동) 201~3501
						23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8동) 202~3402
						24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8동) 203~3403
						25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9동) 201~3501
						26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9동) 202~3402
						27	660(대구테크노폴리스에미지더센터럴 109동) 203~3403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가창면	단산리	제1반	700~770	가창면	단산1리	제1반	44 ~ 64, 142~ 185, 289 ~ 303	
		2	780~824			2	220 ~271, 796, 816 ~ 834	
		3	850~920			3	841 ~ 963	
		4	220~270			단산2리	제1반	700 ~ 770
		5	290~303				2	771 ~ 814, 831 ~ 834
		6	420~480				3	320 ~ 480, 494 ~ 529, 639

참고

행정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행정리 신설

유가읍 봉5리



분할 및 신설

단산1리, 단산2리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6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의2)  
- 존속기한 : 2024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5년)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 신 설 &gt;</p>	<p>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6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 존속기한 : 2024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5년)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운용 및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2023년” 을 “2028년”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u>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존속기한) -----            ----- <u>2028년</u> -----            --. 다만, -----            -----            -----            ----- 「<u>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u>」에 따른 <u>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u> -----            -----            -----.</p>

□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 3. 제안사유

-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을 도모,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와 감사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3조)
- 감사요청과 계획수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7조)
- 사전조사 및 실시·결과 보고 등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2조)
- 공동주택관리 교육, 비밀보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5조)

## 5.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동주택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감사대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감사요청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 의해 선정된 감사요청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서명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상의 누락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요청 대표자에게 그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사요청 대표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사반의 편성·운영 등)**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경우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등의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감사반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반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계획 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감사요청 대표자,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내용을 7일 이상 공개하여 입주자등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조사)**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 사항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위치, 면적 등 일반현황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목별 산출내역
4.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현황 및 그 변경내역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관련 현황
  - 나.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 계약 관련 현황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 전 사전조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기간은 감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반이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이해관계인에게 그 활용 결과를 감사 결과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감사결과 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등의 원본이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및 주의 또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
6. 권고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이사항

**제12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 대표자,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는 수사 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주택관리 교육)**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상위기관에

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과정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보호 등)** ① 군수는 감사요청 대표자가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 또는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동주택 관리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공동주택 명칭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소				
	의무관리 대상여부	세대수	승강기 유·무		난방방식
요청인 대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그 구성원)의 업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감사 요청 사항 (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p>「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요청인 대표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날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b>대구광역시 달성군수</b> 귀하</p>					
첨부서류	1. 관련 증명자료(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2. 요청인 공동서명부(입주자등 10분의 3 이상의 동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2023.6.13. 일부개정 · 시행)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 · 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2023.9.12. 일부개정, 2023.9.15. 시행)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3. 제안사유

- 최근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과 달성군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군수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5.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임차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618조에 따라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말한다.
3.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임대인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기관 운용 보증제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임차인보호 및 지원사업)**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임대차계약 등 주거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임차료 관련 일반상담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라. 착한 중개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이사비 지원

나. 신규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주택임차인 보호 및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등)** 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군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4조 각 호 사업의 추진 시 금원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법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4조제2호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호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2023.6.1. 제정, 2023.7.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전세사기피해자
  - 나.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 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민법(법률)」 (2022.12.27. 일부개정, 2023.6.28. 시행)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2023.4.18. 일부개정, 2023.7.19. 시행)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법률)」 (2023.6.1. 일부개정, 2023.7.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 3. 제안사유

-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주도하는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정원 전문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개방 민간정원 및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5.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 사항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를 따른다.
2. “민간정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생활정원”이란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5. “정원문화”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이하 “정원문화 활성화 등”이

라 한다)를 위해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민간정원 등 조성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활성화 등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4. 주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5.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식물·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술지도 등 실습 교육
4.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개방정원 투어·전시회 등 행사 개최
5. 소식지, 언론을 통한 식물·정원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제공
6.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 추진

9.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원 전문가 활용 등)**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5에 따라 지정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자문하거나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선발된 정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정원 개방 장려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이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제1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 활성화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군 내 정원문화가 확산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군민 주도의 공동체정원 조성 및 관리

2. 군민 대상 정원문화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원문화 관련 캠페인

4.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기관·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2023.7.25. 타법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孢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6(정원의 운영·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5(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 2023년 10월 16일

2. 제출자: 달성군수

### 3. 제안사유

- 정부의 고강도 긴축 재정 체제 전환에 따라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액결정 금액부분을 세입부분에 조정 반영하고, 세출부분에는 시급한 현안사업의 사업비를 긴급 투입하여 민선 8기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4. 추가경정예산 개요

####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985,340	1,025,340	△40,000
일 반 회 계	984,000	1,024,000	△40,000
특 별 회 계	1,340	1,34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0	70	0
의료급여기금	712	712	0
치 수 사 업	558	558	0

## 5. 검토의견

-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53억 원보다 400억 원(감3.90%)이 감액된 9,85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조 240억 원보다 400억 원 감액된 9,8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79억 원, 조정교부금 21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00억 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400억 원, 내부유보금 40억 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여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의 필요사업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고강도 긴축 재정 체제 전환에 따라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액결정 금액부분을 세입 부분에 조정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사업비를 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2023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 2023년 10월 16일

2. 제출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의 교부세와 대구시의 조정교부금 감액결정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을 감액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
  -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감 400억 원
  - 지출계획 중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감 400억 원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재정법」

## 6.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의 교부세와 대구시의 조정교부금 감액결정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을 감액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 기금의 수입계획이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이 감액된 0원이며, 예치금 지출계획이 400억 원이 감액되어 2천 5십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기금 운영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